

# '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정 공고

20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정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해양경찰청장

## 1 필기시험 일정 안내

- 시험일시 : '26. 6. 13.(토) 09:00 ~ 10:20 (응시분야별 상이)
- 시험실 입실시간 : 08:10까지 입실(입실시간 경과 후 시험 응시 불가)
- 시험장소 : 응시 지방청별 6개소(장소안내는 각 지방청 별첨 자료 참고)
  -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49호) “'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 해경학과 필기시험 지역 배정공고” 에 따라 해경학과 응시분야는 지역배정 현황 확인 후 응시

응시 (지방)청	응시분야	시험장명	주소
해경청	해경학과(항해), 해경학과(기관)	4개 지방청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지역배정 현황 확인 후 해당하는 지방청에 응시
	중특단	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71
중부청	순경 공채(남/여), 구급 해경학과(항해), 해경학과(기관), 오염방제항해, 오염방제기관, 오염방제화공, 관제정보보호	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71

서해청	순경 공채(남/여), 구조, 해경학과(항해), 해경학과(기관), 오염방제항해, 오염방제기관, 오염방제환경, 오염방제화공, 선박교통관제, 관제전송기술	목포애향중학교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28-7
남해청	순경 공채(남/여) 해경학과(항해), 해경학과(기관), 오염방제항해, 오염방제기관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80번길 5
	구조, 구급, 오염방제환경, 오염방제화공, 선박교통관제	선화여자중학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80번길 5
동해청	순경 공채(남/여), 구조, 구급, 특공(전술), 해경학과(항해), 해경학과(기관), 오염방제기관, 오염방제환경, 오염방제화공, 선박교통관제, 관제전송기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강의동 103동	강원 삼척시 중앙로 346
제주청	순경 공채(남/여), 구조, 구급, 특공(전술), 오염방제환경, 선박교통관제, 관제전송기술	제주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50

※ 응시 지방청 및 응시분야에 따른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미소지자 응시불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간 만료 전 여권(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접수 후 개명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지참

□ 시험 시간표

응시분야	시험 시간	세 부 내 용
(순경) 중특단, 구조, 구급, 특공(전술)	09:00 ~ 09:40	○ 객관식 : 2과목(과목당 20문항)
(순경) 공채(남), 공채(여) (9급) 일반직공무원 전체	09:00 ~ 10:00	○ 객관식 : 3과목(과목당 20문항)
(경장) 해경학과(항해),(기관)	09:00 ~ 10:20	○ 객관식 : 4과목(과목당 20문항)

## 2 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 가답안 공개 : '26. 6. 13.(토) 13:00 ~ /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이의제기 기간 : '26. 6. 13.(토) 13:00 ~ 6. 16.(화) 13:00
- 이의제기 방법 : ① 이의제기 사유, 법령 및 규정 등 명확한 근거를 포함한 「이의제기」(붙임 1) 작성 후 ②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기관메일([kcgexam@korea.kr](mailto:kcgexam@korea.kr))로 제출  
※ 이의제기 기간 종료 후 이의제기 제출 및 답안 변경 불가
- 확정답안 공개 : '26. 6. 18(목) 13:00 ~ /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사전점수 공개 : '26. 6. 24.(수) 10:00 ~ 6. 25.(목) 18:00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3 유의사항 안내

- 가.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필기시험 응시는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여권)
- 나. 응시자는 답안지에 응시번호, 인적사항, 응시과목, 과목코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문제지가 본인의 응시분야·과목·계급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응시자의 착오·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고지하는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입 또는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답안지에 과목

코드를 표기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플러스펜, 색이 진한 연필 등 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 마.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치된 시계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응시자는 개인용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시간 종료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답안 작성을 중지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사.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전자표식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물품은 시험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자진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지 금지물품 예시)

- ▶ 모든 통신기기 : 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블루투스 이어폰 등
- ▶ 모든 전자기기 : 디지털카메라(펜), 전자사전,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유선 이어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조명기기 등
- ▶ 기타 : 필통, 모자, 방석, 무릎담요, 커블체어,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 (예외적으로 소지 가능 물품)

- ▶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시험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물품

\* 귀마개는 귓구멍을 막기 위한 적절한 크기의 스펀지 형태만 허용되며,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유의사항 고지 및 종료시간 알림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휴대폰 등 소지 금지 물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① 전자·통신기기는 전원을 OFF 하여 ② 수납가능 물품은 본인의 가방에 넣고 ③ 지정된 위치에 가지런히 놓아두어야 합니다. 전원이 OFF 되지 않은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작동 시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중간 퇴실은 금지되며, 화장실 사용 이외의 사유로 이석 시 해당 시간 내 다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 사용은 허용된 시간 내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사용 가능\*하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붙임 2) 참고

차. 응시표의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기재 시간 또는 목적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실에 입장한 후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과 관계없이 잡담을 하거나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소란하게 하거나 기타 행동으로 시험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타. 모든 시험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전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는 강제퇴장 조치 후 해당 시험 답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3 합격자 발표 등

- 일시 : '26. 7. 3.(금) 10:00 ~
- 방법 : 응시 지방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분야 별 각 지방청 및 해양경찰청에 문의바랍니다.
  -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032-835-2336/2436/2536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32-728-8916/8716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61-288-2521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51-663-2416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33-680-2416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064-801-2416

## '26년 2차 채용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

과 목 명	과목명 00번 (분야)_예시
출제문제	<p>13.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항과 어항 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p> <p>①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② 지방어항 : 시·도지사                  ③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                  ④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이의제기 내 용	<p>○ 이의제기 내용(이름 : 000, 응시번호 : 12345678)</p> <p>- 이의제기내용 : 가답안 4번으로 제시했는데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답은 1번입니다.</p> <p>- 이의제기근거 : 명확한 근거제시(법령 조항 등) 어촌어항법(시행령)포함 정확히 법령에 나온 내용입니다.</p>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유의사항 안내

<p><b>사용 원칙</b></p>	<p><b>사용 시간</b> 시험시작 20분 이후 종료 15분 전</p>  <p><b>사용 횟수</b> 화장실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화장실 사용시간은 모두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시간 배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사용 절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요청(동(同)시험실 내 사용은 1명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2명 동시 사용 불가)</li> </ul> </li> <li>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소음주의)</li> <li>3.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안내 및 응시자 서약서」 (붙임 3) 작성 및 소지품 검사</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소지품 검사방법</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b>1단계</b></p> <p>양팔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2단계</b></p> <p>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검사 실시 ※ 탐지결과 특이점 발견 시 동성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p> </div>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사용(지정한 곳 이외 사용 불가)</li> <li>5.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 재실시</li> <li>6.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개인 이동 불가)</li> </ol>
<p><b>유의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 외에는 화장실 사용 불가</li> <li>▶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대기시간,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주의, 화장실 사용은 입실부터 5분으로 제한</li> <li>▶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 입실 불가,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li> <li>▶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소지,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li> </ul>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 입실 가능  
 예) 사용종료 1분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 후 재 입실 가능

